

# 원자력법령

##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사항

1.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외대상 추가
  - 근거규정 : 제5조(방사성동위원소)
  - 종전 :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
  - 현행 :
    - 1)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
    - 2)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2. 신고사용자에 대한 검사 면제
  - 근거규정 : 제197조(시설검사), 제199조(정기검사)
  - 종전 :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 등에 대해서 적용
  - 현행 : 허가사용자에 대해서 적용
3. 안정관리규정 보완
  - 근거규정 : 제201조(안전관리규정) 제2호 및 제4호
  - 종전 :
    - 1)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(제2호)
    - 2) 방사선량률·입자속밀도·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(제4호)
  - 현행 :
    - 1)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·사용 및 판매(제2호)
    - 2) 방사선량률·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(제4호)
4.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면제
  - 근거규정 : 제202조(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)
  - 종전 :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등에 대하여 적용
  - 현행 :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적용, 선임자격 폐지
5. 적용배제 보완
  - 근거규정 : 제213조(적용배제)
  - 종전 :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원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
    - 방사성동위원소 : 사용시설 및 폐기시설 제외
    - 방사선발생장치 : 사용시설, 분배시설, 저장시설 및 폐기시설 제외
  - 현행 :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·판매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설 제외
6. 신고사용자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기준 준수 의무 면제
  - 근거규정 : 제215조(사용의 기술기준)-제219조(폐기)
  - 종전 :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등에 대하여 적용
  - 현행 :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적용
7. 운반검사 제도의 변경
  - 근거규정 : 제237조(운반 및 포장검사)
  - 종전 : 운반신고된 운반에 대하여 운반검사 실시
  - 현행 : 운반에 대한 정기검사로 전환
8. 역무제공업 등록기준(신설)
  - 근거규정 : 제294조의2(등록기준)
  - 현행 :
    - 1) 법인 :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원이상  
개인 : 보유하고 있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
    - 2) 주사무소 :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1인 이상 확보  
사업소 :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1인 이상 확보
    - 3)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출 것
9. 판독취급책임자의 선임(신설)
  - 근거규정 : 제297조의5(판독취급책임자의 선임등)  
제297조의6(판독취급책임자의 대리)
  - 현행 : 판독취급책임자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로 선임하고,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의무 부과
10. 신고사용자에 대한 측정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면제
  - 근거규정 : 제298조(측정), 제299조(건강진단)
  - 종전 : 원자력관계사업자에 의무 부과
  - 현행 :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 제외)에 의무 부과
11. 과징금의 상향 조정
  - 근거규정 : 제323조의3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  - 종전 :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
  - 현행 :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2,000만원
12. 부칙
  - 근거규정 : 제2조(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
    -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허가사용자는 이 영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.